

항소 안내

항소를 하려면 먼저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고 심문관이 이를 기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결 무효 신청을 제출하고 해당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항소를 교통 행정판결 항소위원회(Traffic Adjudication Appeals Board)에 직접 해야 합니다. 귀하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심의 또는 판결 무효 신청이 기각되면 무엇이 항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1. 주차위반 티켓
2. 속도위반 티켓
3.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
4. 판결 무효 신청의 기각

항소 기한

모든 항소는 반드시 재심의 또는 판결 무효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제출되고 DC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차량관리부)에 의해 접수되어야 합니다.

심리 기록

기록은 심리 녹음본의 문서 버전입니다.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출석 심리가 항소 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심리 기록 사본 2통을 주문하셔야 합니다.

주차위반 티켓 또는 속도위반 티켓에 관한 참석 심리가 항소 대상인 경우 또는 우편 행정판결이 항소 대상인 경우에는 기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항소 청구 시점에 기록 비용 예치금으로 \$5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록 비용이 예치금보다 적게 소요되는 경우, 해당 차액은 환급됩니다. 비용이 예치금보다 많이 소요되는 경우, 추가 비용이 귀하께 청구될 것입니다. 이 금액은 청구서 작성일로부터 역일 기준 1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납부되지 않으면, 항소위원회의 재심의 없이 동 항소는 기각될 것입니다.

항소 청구 방법

본 양식 뒷면에 있는 항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벌금, 과태료, 항소 수수료 \$10, 기록 비용 예치금 \$50(해당되는 경우)와 함께 다음 주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PO Box 77411, Washington, DC 20013, Attn: Appeals Office.** 모든 수수료는 D.C. 재무국(D.C. Treasurer)을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문관의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 모든 납입금이 환급됩니다.

귀하는 모든 벌금, 과태료, 항소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중 하나의 납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납부금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해당 항소는 항소위원회의 재심의 없이 기각될 것입니다.

항소는 dmv.dc.gov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Online Services**(온라인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Online Adjudication Request**(온라인 행정판결 신청)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소 위원회의 검토 대상

항소 위원회는 최초 심리에 제출된 티켓, 증언, 증거와 심리 기록, 항소 근거를 기술한 귀하의 간략한 서면 진술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항소 위원회의 직접 대면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항소 위원회는 이전에 심문관에게 제출되지 않은 어떠한 증거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소 신청서

1. 항소 종류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 주차 또는 속도위반 티켓
-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
- 판결무효 신청의 기각

2. 아래 정보란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 | |
|-----------------|-----------------|---------------------|
| 일자: | | |
| 성 (Last Name) | 이름 (First Name) | 중간 이름 (Middle Name) |
| | | |
| 주소, 시, 주 및 우편번호 | | 티켓 번호(들) |
| | | |

3. 신청 수수료:

- 주차위반 티켓 또는 속도위반 티켓에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벌금, 과태료와 항소 수수료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소 대상인 각 티켓에 대하여 **\$10**를 추가하십시오.
-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결정이 항소 대상인 경우에는 벌금, 과태료, 항소 수수료 **\$10**와 기록 비용 예치금 **\$5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소 대상인 각 티켓에 대하여 **\$10**를 추가하십시오.
- 판결무효 신청의 기각에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벌금, 과태료, 항소 수수료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소 대상인 각 티켓에 대하여 **\$10**를 추가하십시오.

주: 기록 비용 예치금 \$50는 귀하의 심리가 출석 심리였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우편 행정판결로 심리가 실시된 경우에는 기록 비용 예치금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4. 항소 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술서 항소 위원회는 심문관에게 제출된 증거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반드시 항소 근거를 기술하는 간략한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5. 항소 체크리스트 귀하의 항소는 반드시 재심의 또는 판결무효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 각 티켓의 벌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십시오.
- ✓ 각 티켓에 대해 항소 수수료 **\$10**를 납부하십시오.
- ✓ 기록 비용 예치금 **\$50**를 납부하십시오(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출석 심리의 경우)
- ✓ 귀하의 항소 신청서(본 양식)와 간략한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 ✓ dmv.dc.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PO Box 77411, Washington, DC 20013, Attn: Appeals Office의 주소로 우편송달하여 주십시오.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항소는 항소위원회의 재심의 없이 취소될 것입니다.